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종사자에게는 자기계발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에는 시설종사자 부재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의 연결"

생각의 시작에서 변화의 모습까지
오늘을 지나 내일에 대한 믿음까지
대전복지재단은 전체를 하나로 헤아리겠습니다.

- 대전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개발**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복지**
-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복지**
-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
-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미래지향적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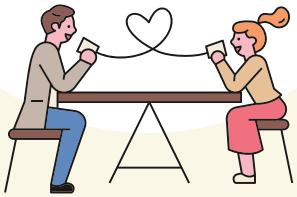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3층(대흥동)
T. 042-331-8980 / 5075 F. 042-331-5072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결되다

2020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GUIDE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안내

지원기간 2020년 1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사회복지 전 분야 종사자 및 시설 · 단체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및 조리원)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 적용대상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② 국비, 지방비 미지원 시설 지원 불가
③ 운전 및 시설관리 등 직접서비스제공과 관련 없는 종사자 제외

지원범위
① 휴가 · 교육 · 경조사 · 병가 · 출산 등 업무공백 시
②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보육휴가
③ 재단 힐링심리지원사업 참여자
④ 기타 긴급지원을 요하는 경우 시와 협의 후 지원

신청일수
① 1회 연속 5일 이내
② 부득이한 경우 최대30일까지
(센터에서 부득이한 경우라 인정 될 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세부내용

근무시간 09:00 ~ 18:00(8시간)
8시간 범위 내 탄력지원 (예) 10:00~19:00(8시간)
※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단기대체인력 배치

제출서류 대체인력 지원신청서, 업무안내서, 증빙서류, 서약서, 시설 신고증

비용 무료

파견시설 유의사항
① 허위 · 부정한 신청 시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② 2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참여 제한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④ 대체인력 휴게시간준수
⑤ 주「52시간근무제」적용으로 단기대체인력 파견 시 1인당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상시 대체인력 이용시설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가능

문의전화 대전복지재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Tel. 042-331-8980 / 5075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센터 대표메일(dwf2018@naver.com)로 전송**
관련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dwf.kr**)에서 출력
➲ 사업소개 ➲ 대체인력지원사업 ➲ 공지게시판 다운로드

신청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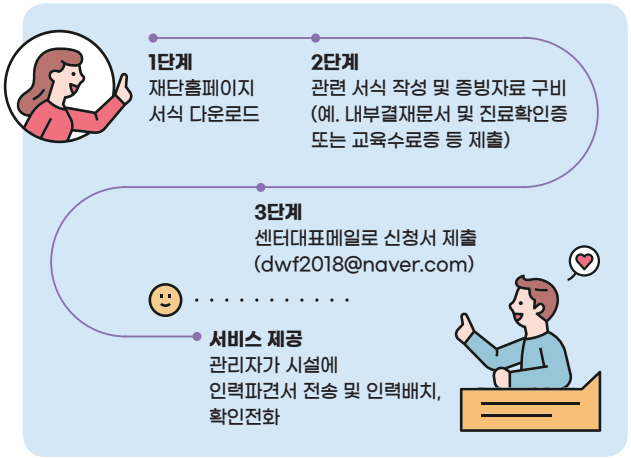

문의전화 대전복지재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Tel. 042-331-8980 / 5075